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7호 2019. 3. 8(금)

선 람	기관의 장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9-3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1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9-416호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 2
- 남원시 공고 제2019-456호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4
- 남원시 공고 제2019-4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13
- 남원시 공고 제2019-488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17
- 남원시 공고 제2019-490호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서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 41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4

남원시 고시 제2019 - 32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9년 03월 08일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간사업
-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 3. 사 업 비 : 자력사업
-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사매면 관풍리 산65번지
 - 나. 사 업 량 : 4,959m²
 - 다. 사업기간 : 2019. 03. 30. ~ 2020. 03. 31.
 -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 사매면 **, ***-***, 한 * *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9 - 416호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 3차 사적 추가지정 구역 -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3차 사적 추가지정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7일

남 원 시 장

1. 사업 개요

- 가. 사업명 :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3차 사적 추가지정 구역)
- 나. 위치 : 전북 남원시 동충동 354-3 외 29필지
- 다. 사업면적 : 30필지 / 5,909㎡
- 라. 사업기간 : 2019. ~ 2020.
- 마.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 가. 토지 : 전북 남원시 동충동 354-3 외 29필지 (토지조서 참조)
- 나. 물건 : 주택 외 (물건조서 참조)

3.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9. 02. 28. ~ 2019. 03. 14. (15일)
- 나. 열람장소 :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063-620-6171, 6947)
-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라. 이의조치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조치하며,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 (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 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 공고 → 토지 등 감정평가 → 손실보상 협의 → 보상

라. 협의조건 : 토지 및 물건 등에 압류 및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가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마.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 1) 추천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시에 제출
- 2) 추천기한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3) 추천제한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 가능

5. 기타사항

가.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보상시기에 맞춰 상세 안내문을 개인별로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063-620-6171, 69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9 - 456호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콘텐츠 확장을 위하여 한식 및 다양한 한옥주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료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구도심권 활성화 및 남원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옥생활체험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 조항 신설 (안 제8조, 별표1)
- 나. 남원예촌 부대시설 사용료 개정 (안 별표1)
 - 사랑마루 대관료 개정(12시간 이용 기준 신설-1백일 워크숍 요금 현실화)
 - 이용객 전용 사랑마루 한식 체험료 신설(다수 요청 반영)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관광과

-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46)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관광과(☎063-620-61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남원예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생활체험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예촌 사용료 기준(제8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현행과 같음)

면적(m ²)	정원/최대	객실수	사용료 (원)	비 고
20.5~21.0	2인	5	200,000	1. 요금은 1일 사용시간 20시간 기준 2. 입실 당일 15:00, 퇴실 익일 11:00 기준(단 1일 사용 시간인 20시간미만 사용하더라도 1일 사용료 적용) 3. 추가 침구류 주문 시 1세트 당 40,000원의 추가 요금 적용, 최대인원 초과 시 입실 불가 4. 객실별 구들 체험비 포함 5. 퇴실시간 초과 시 사용료 - 12:00까지 10,000원(1시간만 추가 사용 가능), 15:00이후 퇴실 시 1박 사용료 적용
25.2~29.1	2인/3인	7	250,000	
37.75~44.15	3인/4인	8	300,000	
58.75	4인/6인	2	400,000	
95.35	4인/6인	1	700,000	
131.85		1	800,000	

2. 부대시설 사용료

가. 사랑마루 대관

구 분 시설명		사 용 료 (원)		
		4시간 기준	8시간 기준	12시간 기준
사랑 마루	대관	400,000	700,000	1,000,000
비 고		1. 4시간 기준 : 4시간 이하 이용 시 적용 2. 8시간 기준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이용 시 적용 3. 12시간 기준 : 8시간 초과 12시간 이하 이용 시 적용 4. 숙박객은 사용료 10% 감면 5. 대관은 음향, 영상, 냉난방 시설 등 포함		

나. 사랑마루 한식 체험료

구 분 시설명		체험료(원)				
		조반체험 (7찬)		반상체험 (7찬)	월매 한상체험 (일반형)	춘향 한상체험 (고급형)
		일반형 조 반	숙박용 조 반			
사랑 마루	한식 체험	18,000	15,000	25,000	45,000	55,000
비 고		1. 일반형 조반 : 숙박 체험객 당일 요청 아침 상차림 2. 숙박용 조반 : 숙박 체험객의 사전 예약 아침 상차림 3. 반 상 : 숙박체험 및 대관이용객 전용 행사용 반상차림(7찬) 4. 월매 한상 : 숙박체험 및 대관이용객 전용 한상체험(일반형) 5. 춘향 한상 : 숙박체험 및 대관이용객 전용 한상체험(고급형)				

다. 그 밖에 한옥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별도 재료비 징수할 수 있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제8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탁운영 시 사용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별도 협약서에 따른다.</p> <p><u><신 설></u></p> <p>②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료 등) ① ----- ----- ----- ----- ---</p> <p><u>② 시장은 남원예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생활체험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현 행

【별표 1】

남원예촌 사용료 기준(제8조 관련)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명		사용료(원)		비 고
		반일	전일	
사랑 마루	대관	400,000	700,000	1. 반일 : 4시간 기준 (단 4시간 이하 이용시 반일 요금 적용) 2. 전일 : 8시간 기준 3. 숙박객은 사용료 10% 감면 4. 대관은 음향, 영상, 냉난방 시설 등 포함

개 정 안

2. 부대시설 사용료

가. 사랑마루 대관

구 분 시설명		사용료(원)		
		<u>4시간 기준</u>	<u>8시간 기준</u>	<u>12시간 기준</u>
사랑 마루	대관	400,000	700,000	<u>1,000,000</u>
비고		1. 4시간 기준 : 4시간 이하 이용 시 적용 2. 8시간 기준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이용 시 적용 3. 12시간 기준 : 8시간 초과 12시간 이하 이용 시 적용 4. 숙박객은 사용료 10% 감면 5. 대관은 음향, 영상, 냉난방 시설 등 포함		

신 설 안

나. 사랑마루 한식 체험료

구 분 시설명		체험료(원)				
		조반체험 (7찬)		반상체험 (7찬)	월매 한상체험 (일반형)	춘향 한상체험 (고급형)
		일반형 조 반	숙박용 조 반			
사랑 마루	한식 체험	18,000	15,000	25,000	45,000	55,000
비 고		1. 일반형 조반 : 숙박 체험객 당일 요청 아침 상차림 2. 숙박용 조반 : 숙박 체험객의 사전 예약 아침 상차림 3. 반 상 : 숙박체험 및 대관이용객 전용 행사용 반상차림(7찬) 4. 월매 한상 : 숙박체험 및 대관이용객 전용 한상체험(일반형) 5. 춘향 한상 : 숙박체험 및 대관이용객 전용 한상체험(고급형)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19-4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19년 3월 8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위치	시설명	등급	노선번호	사업구간	사업량	착수일	시행청	비고
							준공예정일		
새터 중로 개설 공사	남원시 신정동 조산동 일원	도로	중로	1-11	남원시 산정동 304-1 ~ 남원시 조산동 433-9	L=396m B=20m	2018. 6 2020. 12	남원시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남원시장
 - 나. 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5.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63)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토 지 조 서

연번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분할 지번 (편입)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권리 명세	성명	주소	
1	남원시	신정동	308	답	2323		18	서*한	남원시 화정동 608				
2	남원시	신정동	308-4	도	55		54	국	남원시				
3	남원시	신정동	308-2	도	73		9	국	남원시				
4	남원시	신정동	309-2	도	93		50	국	남원시				
5	남원시	신정동	304-1	구	454		28	한국농 어촌공 사	의왕시 포일동 487				
6	남원시	신정동	808	도	1567		18	국	건설부				
7	남원시	신정동	807	구	1240		13	국	농림축산식품부				
8	남원시	신정동	254-4	답	326		7	장*임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231-21				
9	남원시	신정동	309-4	도	1026		1026	국	남원시				
10	남원시	신정동	184-2	제	10862		309	국	건설부				
11	남원시	신정동	809	천	9720		151	국	건설부				
12	남원시	조산동	587	천	17217		515	국	건설부				
13	남원시	조산동	373-2	천	32		32	국	남원시				
14	남원시	조산동	373-1	제	3380		327	국	건설부				
15	남원시	조산동	370-2	전	1		1	임*옥	신정동 231				
16	남원시	조산동	371-2	전	138		138	국	남원시				
17	남원시	조산동	372-2	전	244		244	국	남원시				
18	남원시	조산동	580-54	구	7703		205	국	농림축산식품부				
19	남원시	조산동	398-1	답	479		479	국	남원시				
20	남원시	조산동	397-1	답	91		91	국	남원시				
소 계					57,024		3,715						

연번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분할 지번 (편입)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권리 명세	성명	주소	
21	남원시	조산동	580-58	구	655		141	국	농림축산식품부				
22	남원시	조산동	396-1	답	139		139	국	남원시				
23	남원시	조산동	414-1	답	396		396	국	남원시				
24	남원시	조산동	415-1	답	701		701	김*식	노암리 441				
25	남원시	조산동	408-1	답	537		537	국	남원시				
26	남원시	조산동	421-1	답	29		29	박*님	남원시 금동 283-1				
27	남원시	조산동	420-1	답	388		388	박*기	남원시 시청북1길 24				
28	남원시	조산동	427-1	답	422		422	국	남원시				
29	남원시	조산동	431-1	답	624		624	국	남원시				
30	남원시	조산동	430-1	전	165		165	국	남원시				
31	남원시	조산동	429-4	답	154		154	국	남원시				
32	남원시	조산동	429-5	답	99		99	국	남원시				
33	남원시	조산동	432-4	답	351		351	국	남원시				
34	남원시	조산동	433-4	답	148		148	국	남원시				
소 계					4,808		4,294						
총 계					61,832		8,009						

□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 건 명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 명세	성 명	주 소	
1	남원시 조산동	398	지주 등	부직포, 웬스등	1식	남원시 샛터앞길 27-4	이*열				
			바닥포장	콘크리트	42m ²						
소계			2건								
2	남원시 조산동	371	소나무		203주	남원시 샛터앞길 27-4	이*열				
			매실		2주						
			살구나무		1주						
			감나무		5주						
			남천		2주						
			백일홍		2주						
			중국단풍		1주						
			아로니아		2주						
			두릅		15주						
			관정	전기시설포 합	1식						
			조경석		1식						
바닥포장		12m ²									
소계			12건								
3	남원시 조산동	372	옻나무		5주	남원시 샛터앞길 19-6	김*현				
			감나무		3주						
			밤나무		1주						
			관정		1식						
소계			4건								
4	남원시 조산동	580- 54	교량				이*열				
소계			1건								
총계		4									

남원시 공고 제2019 - 488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자율방재단 목적, 조직, 임원 및 임무,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 나. 지역자율방제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안 제10조)
- 다. 교육, 훈련, 중앙지원단 자문,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안 제14조)
- 라.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5조)

3. 입법예고기간 : 2019. 03. 07.~ 2019. 03. 27.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27일까지 의견을 남원시장(참조: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46)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 2.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재난과장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자율방재단 목적, 조직, 임원 및 임무,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 나. 지역자율방제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안 제10조)
- 다. 교육, 훈련, 중앙지원단 자문,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안 제14조)
- 라.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3. 07. ~ 2019. 3. 27.(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의 참가자격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원이 되며, 시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읍·면·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해당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통해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단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 2. 자연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과약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단위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시 재난안전상황실의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위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합동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 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1조(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의 방제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 등) ①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을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방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제15조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둘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주소 :

성명 :

귀하를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호 : _____

성명	○○○ (성별)	연령		혈액형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격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

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붙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활 동 확 인 서(예시)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은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6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횃 수	시 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록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4호서식]의 연
번을 붙여서 기록 [(예) 10-1]

※ 횃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남원시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출 입 증

출 입 증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div> <p>사 진 (3×4cm)</p>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 5.5cm →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div>	↑ 7. 7 cm ↓
<u>바탕 배경에 시 상징(휘장) 삽입</u>	

[별지 제9호서식]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 (은행 , 계좌번호 :)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뒤쪽)

<p>제출서류</p>	<p>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p>	<p>수수료 없음</p>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p>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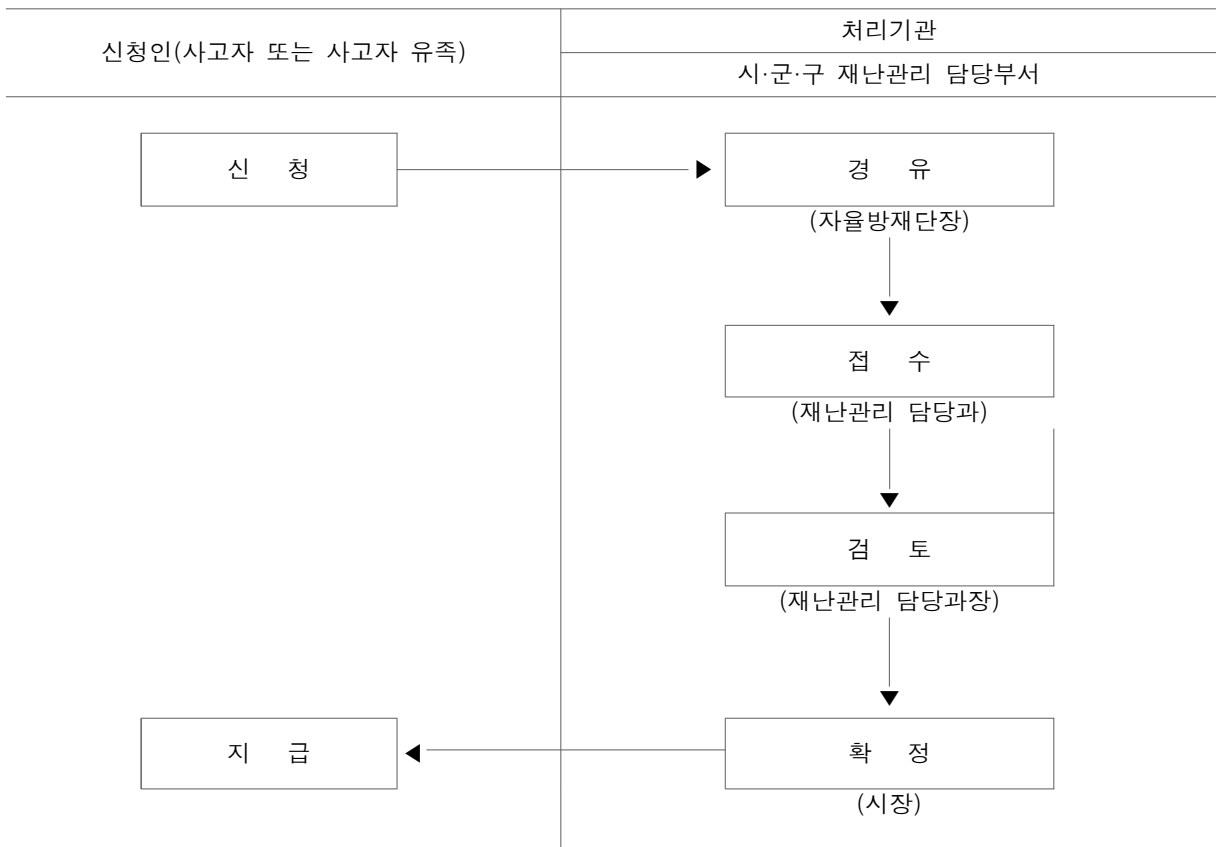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9 - 490호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입법예고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남 원 시 장

1.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던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 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3. 입법예고기간 : 2019. 03. 07. ~ 2019. 03. 27.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27일까지 의견을 남원시장(참조: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46)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 02.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재난과장

1.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던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3. 7. ~ 2019. 3. 27.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